

[별표 8] <개정 1995.8.31>

검사의 종류 및 적용대상(제32조관련)

검 사 의 종 류		적 용 대 상
제조검사	용접검사	동체·경판 및 이와 유사한 부분을 용접으로 제조하는 경우의 검사.
	구조검사	강판·관 또는 주물류를 용접·확대·조립·주조등에 의하여 제조하는 경우의 검사.
설치검사		신설·증설 또는 개체한 경우의 검사(사용연료의 변경에 의하여 검사대상이 아닌 보일러가 검사대상으로 되는 경우의 검사를 포함한다).
개조검사		다음 경우의 검사 1. 증기보일러를 온수보일러로 개조 2. 보일러 섹션의 증감에 의한 용량의 변경 3. 동체·돔·노통·연소실·경판·천정판·관판·관모음 또는 스테이의 변경으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대수리 4. 연료 또는 연소방법의 변경. 5. 철금속가열로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수리.
설치장소변경검사		설치장소를 변경한 경우의 검사. 다만, 이동식 검사대상기는 제외한다.
계속사용 검사		설치검사, 개조검사 또는 설치장소변경검사후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검사.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성능을 추가로 측정한다. 1. 용량이 1t/h(난방용은 5t/h)이상인 강철제보일러 및 주철제 보일러 2. 철금속가열로